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시·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부과 대상	과태료 금액		
	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1호	법인	200	400	600
		법인이 아닌 자	50	100	200
나.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2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다.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1호	법인	200	400	600
		법인이 아닌 자	50	100	200
라.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	법 제21조 제1항제1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	100	250	500

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	호	자			
마.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1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바.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"대부" 또는 "대부중개"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2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사.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3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아.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4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자.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4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차.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5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
카.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5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타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6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파.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6호의2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하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7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거.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8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너.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6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더.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8호	법인	1,000	2,000	3,000
		법인이 아닌 자	500	1,000	1,500
러.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1조 제1항제9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머.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	법 제21조	법인	500	750	1,000

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	제1항제10호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버.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	법인	600	1,000	2,000
	제1항제10호의2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서.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	법인	200	400	600
	제2항제8호	법인이 아닌 자	50	100	200
어.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21조	법인	500	750	1,000
	제2항제9호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저.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	법 제21조	법인	1,000	2,000	3,000
	제1항제11호	법인이 아닌 자	500	1,000	1,500
처.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작성하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	법인	600	1,000	2,000
	제1항제12호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커.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1조	법인	500	750	1,000
	제2항제10호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